



보도 사진에 담긴 고민, 〈뱅뱅클럽〉

김주연
변호사
인문중재위원회 접수상담팀

‘아일란 쿠르디’, 사진의 위력과 사진 기자

시리아 난민, 세 살 배기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은 우리의 마음을 아리게 한다. 지중해의 거센 파도가 내전을 피해 그리스로 가던 고무보트 위의 쿠르디를 덮쳤다. 마치 잠이 든 것처럼 편안해 보이는 쿠르디의 작은 몸을 보면, 그를 떨게 했던 무차별한 총소리와 위태로운 뱃길에 생사를 걸게 만든 주변국의 냉정한 난민 정책이 떠오른다. 얼마 전 있었던 파리의 테러로 유럽의 난민 정책은 다시금 향방을 알 수 없게 되어버렸지만, 어쨌든 이 한 장의 사진은 난민 수용의 장벽을 낮추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사진이 보도된 뒤, 줄곧 난민 수용에 부정적이던 영국이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프랑스와 독일도 난민 쿼터제에 합의했다.

그런데 이런 사진의 위력에 비해 사진 기자에 대한 관심은 의외로 낮다. 한 번쯤 이 사진을 찍은 기자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모래사장에 엮어진 자그마한 주검을 발견한 사진 기자에 대해서 말이다. 차가운 파도가 아이를 철썩철썩 때리는 상황에서 사진 기자는 아이를 안아 올리는 대신, 어깨에 멘 카메라를 내리고 빛의 양을 가늠하여 조리개를 맞춘 뒤 렌즈를 통해 조용히 아이를 응시한다. 우리가 마주하는 한 장의 사진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어진 것이다.

〈뱅뱅클럽〉에서 본 종군 기자의 죄의식

그레그 마리노비치(이하 '그레그')는 “좋은 사진들. 비극과 폭력은 분명히 강력한 이미지를 만든다. (중략) 그러나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우리는 대가를 치른다.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감정, 연약함, 그리고 동정심이 셔터를 누를 때마다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간다.”¹⁾라고 했다. 그레그는 내전 중이던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하 '남아공')을 취재한 종군 기자다. 그는 남아공에서 케빈 카터, 켄 오스터브룩, 주앙 실바(이하 '케빈', '켄', '주앙')를 만나 동료가 되었고, 이들은 '뱅뱅(bang-bang : 요란한 총소리)클럽'이라 불렸다. 남아공은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으로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흑인을 지배해 오다가, 1990년 넬슨 만델라가 30년의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된지 얼마 되지 않아 만델라가 지휘하는 아프리카민족회의(ANC)와 백인 정부가 부추긴 줄루족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다. 영화 〈뱅뱅클럽〉은 남아공 내전을 취재하던 위 4명의 사진 기자가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영화가 나오기 전에 그레그와 주앙은 그들의 경험을 담은 『뱅뱅클럽(Snapshots from a hidden war)』이란 동명의 책을 내기도 했다. 위 영화와 책은 같은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둘 다 보아도 지루하지 않다. 영화와 책에서 각기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 영화에는 전쟁의 참혹함이, 책에는 사진 기자가 느끼는 피로감과 죄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그들이 전쟁을 취재하는 과정은 아비규환이었다. 어느 날 그레그는 군중들이 어떤 줄루족 남성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살해의 이유는 단지 그가 줄루족이기 때문이었다. 누군가는 돌을 내리쳐 그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는 그에게 석유를 뿌리고, 누군가는 호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냈다. 어느 누구도 말리는 이는 없었다. 그레그가 군중들을 말려보려 하지만 소용없었다. 몸에 불이 붙은 줄루족 남성이 군중 밖으로 뛰쳐나가고, 이를 그레그가 촬영하려는 바로 그 순간, 어떤 이가 칼을 들고 그 남성에게 달려든다. 그리고 불이 붙은 남자와 칼을 들고 달려드는 남자의 모습이 그의 카메라에 담겼다. 전쟁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이 사진으로 그레그는 풀리처상을 받는다.



영화 '뱅뱅클럽' 포스터
(출처: 다음 영화[<http://movie.daum.net/>])

1) Marinovich, G. & Silva, J., 2011, 『뱅뱅클럽』, 김성민 역(월간사진출판사), 217쪽.

또 다른 일화도 있다. 그레그는 전쟁 중에 억울하게 죽은 아기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조명이 부족하자 그레그는 함께 있던 여자 친구에게 스탠드로 죽은 아기를 비추어 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평소 그레그가 촬영한 사진을 편집하는 직장 동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그녀조차도 정작 촬영 현장에 동참하게 되자 “넌 감정도 없다. 그 순간에 어떻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며 그레그를 비난했다.

내전이 점점 중국으로 치달던 어느 날, 그레그는 가슴에 총상을 입는다. 그레그가 그 날을 회상하는 장면은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다. “난 가슴에 총을 맞았다. 가슴의 총상이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지를 그 동안 수많은 부상자들을 보면서 알고 있었다. (중략) 그 순간 공포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상하게도 내가 총에 맞았다는 사실로부터 무언인가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그 동안 비극의 순간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을 엿보며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 늘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내가 같은 처지가 되면서 일종의 안도감이 찾아왔고, 평안이 나를 감싸왔다.” 세상에, 총상을 입는 순간의 안도감과 평안이라니! 그들은 대체 무엇을 희생하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진을 찍는 것이라 말인가. ‘뱅크클럽’의 멤버 주앙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그저 사진만 찍었던 것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또 다른 멤버 케빈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케빈의 자살은 경제적인 어려움, 약물 중독 등 여러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촬영 대상에 대한 죄의식도 케빈을 괴롭게 만든 주요한 이유 중 하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독수리와 소녀’, 보도 의무와 구조 의무의 형량



1994년 풀리처상 수상작 <독수리와 소녀>
(출처: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wiki/Kevin_Carter])

이는 케빈이 찍은 ‘독수리와 소녀’로, 1994년 풀리처상을 받은 사진이다. 케빈이 잠시 남아공을 떠나 수단의 기아 실태를 취재하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케빈의 카메라에 굶주림에 지쳐 몸을 가누기 힘든 한 소녀와 그 소녀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독수리가 들어왔다. 그는 셔터를 눌렀다.

이 사진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독수리에게 쫓기는 어린 아이에게 사람들은 깊은

동정과 비애감을 가졌다. 수단에는 속속 후원금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어느 일본인은 “우리가 너무 슬퍼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장면으로 이끄는 사진”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케빈은 이 사진으로 여러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많은 이들은 케빈에게 “소녀를 구해줬느냐?”고 물었다. 케빈은 사진을 찍은 후 독수리를 쫓아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왜 1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급식소에 소녀를 데려다주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케빈은 수단의 참담한 상황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기자로서의 보도 의무를 완벽히 마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이를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추궁하는 여론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이 사진은 보도 의무와 구조 의무의 동시 이행에 관한 딜레마가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진을 찍지 말고 이 불쌍한 아이를 먼저 구했어야 하는가?’, ‘사진을 찍고 난 뒤 아이를 구하면 어떤가?’, 혹은 ‘사진 기자에게 이 아이를 구할 의무가 있는가?’ 등 여러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은 만약 사진을 찍느라 아이를 구할 적시의 기회를 놓쳐 아이가 죽었다고 가정한다면 더 증폭될 것이다.

만약 소녀가 사망했다면, 케빈은 소녀의 죽음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까? 여기서 논점은 케빈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였을 때’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적 책임을 묻곤 한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그 예이다. 이준석 선장은 세월호 승객들을 살해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선장에게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해한 것과 똑 같다고 보아 살인죄가 인정됐다. 우리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가령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선장은 승객에 대하여, 운전자는 자신이 다치게 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될 수 있다. 즉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부작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으려면, 위험발생을 방지해야 할 작위 의무가 먼저 존재해야 한다.

우리 법에 따르면, 케빈은 소녀의 위험 발생을 방지할 법률상, 계약상 관계에 있지도 않고, 소녀가 케빈으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도 아니므로, 케빈에게는 소녀를 구할 법률상 의무가 없고, 따라서 설령 소녀가 죽었다고 해도 그는 법적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자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 러시아, 일본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규정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한다. 이는 강도를 당해 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유대인을 제사장은 외면했으나 오히려 유대인과 적대관계에 있는 사마리아인이 구해 주었다는 신약성서 내용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국내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제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뉘는데, 반대 측은 자선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형벌은 최소한

도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찬성 측은 사회의 도덕성과 연대를 위해서 이러한 규정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설령 법적 구조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윤리적 구조 의무는 남아있다는 점이다. 그레그와 동료들도 구조 의무에 대해 늘 고민했고, 전쟁 현장에서 보도 의무와 구조 의무를 모두 조화롭게 이행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아래는 이러한 고민을 보여주는 책의 한 구절이다.

“여러 전투 현장에서 우리는 사진 촬영을 멈추고 부상자를 도운 적이 있었다. 나와 대부분 함께 일한 하이디는 저널리스트도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의무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믿고 있었다. 몇 차례의 격렬한 논쟁을 거친 후에 우리는 만약 부상당한 사람을 보게 되면 하이디가 돕기 전에 60초 동안만 부상자의 사진을 촬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케빈을 비롯해 함께 일하던 모든 사진가들은 이를 준수하기로 했다. 60초 동안 촬영한 뒤 우리는 하이디와 함께 부상자를 돕거나 아니면 부상자를 돕는 하이디가 프레임에 들어오지 않도록 피해서 촬영을 했다. 그리고 주앙이 말한 것처럼 현장에서 어떻게 도움의 손길이 미쳤는지를 사진 설명에 포함시키는 것도 생각해야 했다. 우리가 전선을 안전하게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자동차를 가진 유일한 사람들이고, 병원에 부상당한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일 경우에는 우리는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해답이 언제나 명쾌한 것만은 아니었다. 우리가 언제 개입하고, 언제 사진을 계속 촬영해도 되는지에 대한 고정된 규칙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²⁾

보도 의무와 구조 의무의 이익형량에 대해 일률적인 답을 내리기는 힘들 것이다. ‘내가 찍은 이 사진이 전쟁 종결에 도움이 되어 그로 인해 10,000명을 살릴 수 있게 된다면, 내가 촬영 당시에 1명을 구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혹은 ‘기아 상태에 처한 만 명을 구할 수 있는 사진을 찍느라 한 사람의 다리 불구를 막지 못했다면, 이는 옳은 선택이라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은 생명 또는 인간의 존엄을 양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라는 오래된 논쟁과 같은 맥락에 있다.

‘독수리와 소녀’ 사진이 보도 의무와 구조 의무의 딜레마가 투영된 사진으로 이슈가 되었던 것과 달리, 단지 기자에 대한 비난으로 그 운명을 다해버린 사진도 있다. 뉴욕포스트지 1면에 실린 사진이었는데, 뉴욕의 지하철 승강장에서 말다툼을 하던 흑인 남성이 한 한인 남성을 지하철 선로로 밀어뜨렸고, 마침 그곳에 있던 기자가 이 장면을 찍은 것이다. 이 사진은 ‘이 남자는 곧 죽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한인 남성은 결국 사망했다. 기자는 플래시를 터뜨려 지하철 기관사에게 선로에 사람이 떨어진 사실을 알리려고 했었지만 이 말을 믿는 이는 많지 않았다. 기자의 위협에 처한 사람은 구조하지 않고 사진만 찍었다며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이 사진은 ‘독수리와

2) Marinovich, G. & Silva, J.(2011), 215쪽.

소녀'처럼 보도 의무와 구조 의무의 딜레마라는 사회적 이슈를 생성해낼 만한 가치도 없는 사진이었다. 수단의 소녀는 살았고 한인 남성은 죽었다는 결과의 차이도 있지만, 이것이 이 사안을 판단하는 핵심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사진 기자가 과연 무엇을 찍으려고 했는가?'에 있다. 설령 한인 남성이 살았다고 해도 위 사진이 사회에 아무런 의미 있는 메시지도 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자극만 주었다면 이 사진은 실패한 이익형량의 표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사진은 우리에게 섬뜩하고 서늘한 감정만을 남겼다. 사진 기자가 아무런 고민과 성찰 없이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셔터를 누를 때, 우리 사회의 존엄성은 소멸하는 것이다.

〈뱅뱅클럽〉이 파생시킨 여러 의문들은 중국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사진 기자가 보

도 의무와 구조 의무 형량에 대한 고민을 놓지 않을 때, 언론보도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카메라를 든 기자는 단지 이미지만을 찍는 것이 아니며, 그래서 안 된다.

에필로그, 개인의 권리와 사회 공익의 형량

영화를 보면서 보도 대상자의 초상권 문제도 떠올려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레그가 내전 피해자를 클로즈업해 찍는 장면이라든가, 케빈이 독수리에 쫓기는 수단의 어린 소녀를 찍는 장면은 '내전의 피해자나 수단의 어린 소녀의 허락을 얻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정당할까?'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수단의 소녀는 자신의 사진으로 수단의 기아 상황이 나아졌으므로 초상권 공개를 괜찮다고 여길까. 아니면 굶주림에 지쳐 독수리에 쫓기는 과거 사진이 여전히 수치스러울까. 만약 후자라면 우리가 소녀에게 공익을 위해 초상권 침해를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온당할까. 결국 이 문제도 개인의 권리와 사회 공익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앞의 쟁점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또한 서두의 쿠르디 사진 역시 마찬가지이다. 쿠르디의 사진이 난민 장벽을 낮추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쿠르디의 초상권 침해는 용인되어야 할까. 우리들은 수단의 소녀와 쿠르디의 아버지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한 케빈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했는지 알지 못한다. 개인의 권리와 공익을 비교하고 형량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정답이 없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Controversial: Tuesday's New York Post cover

2012년 12월 4일자 뉴욕포스트지 1면 (출처: 영국 데일리메일 보도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2243344/Subway-death-New-York-Post-photographer-claims-help-doomed-Ki-Suk-Han.html>])